

2019년 12월 17일 제정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서기 2019년 12월 17일 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경영, 경제, 회계,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를 해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를 사외이사 예비후보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,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상법, 기타 관련 법규 및 회사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하되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 **제6조(소집권자)**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**제7조(소집절차)**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과 장소를 정하여 그 3일전까지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**제8조(결의방법)**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**제9조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**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**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**제11조(통지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 주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**제12조(의사록)**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**제 4 장 보 칙**

### **제13조(간사)**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이사회 간사가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**제14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(2019.12.17)**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